

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

□ 도입 배경

-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
- 재난안전제품의 품질, 성능,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에 기여

* 근거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3조의4(재난안전제품 인증)

□ 인증 개요

- (인증형식) 법적근거가 있는 법정인증,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, 접수 후 인증대상·기준을 결정하는 사후확정형 인증

- (인증대상)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*

- * ①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
- ②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
- ③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

- (인증절차) 기업의 인증신청 접수를 받아 3차례 심사 후 인증서 발급

신청 ⇒ 검토·접수 ⇒ 1차 심사 ⇒ 현장심사 ⇒ 2차 심사 ⇒ 예정공고 ⇒ 인증서 발급

- 1차 심사 :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·안전성·기술우수성 등 심사
- 현장심사 : 지속적 생산·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
- 2차 심사 :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심사

- (인증표시) 인증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 표시

- (사후관리) 인증의 유효기간(3년) 내 최소 1회 이상 정기적,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실시,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여부 지속적 관리

참고2

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

* 「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」 (행안부 고시)

인증 품목		품목별 정의
1. 예측·진단	1-1. 재난예측 제품	기상 및 기후변화, 풍수해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재난을 사전 예측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
	1-2. 구조물 진단 제품	구조물의 효용성 증진 및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제품
	1-3. 비구조물 진단 제품	구조물외 전기, 가스, 전자파 등의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·점검하는 제품
2. 감지	2-1. 모니터링 제품	화재, 홍수, 테러 등 재난 상황 발생 및 진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추적감시 제품
	2-2. 안전센서 제품	재난 발생 및 발생 징후를 감지하여 신속히 재난을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지 제품
3. 대비	3-1. 개인보호구 제품	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제품
	3-2. 시설물보강 제품	노후, 손상에 의해 취약해진 시설물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·보강 제품 또는 예상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제품
4. 대응	4-1. 확산방지 제품	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요인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
	4-2. 위험인자해소 제품	재난 발생 후 재난 확산을 가속화하거나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제품
5. 대피	5-1. 비상탈출 제품	육상 및 해상 재난 시 신속하게 위험지역을 이탈하기 위한 비상탈출 목적의 제품
	5-2. 대피안내 제품	재난 발생 경고 및 인명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
6. 구조	6-1. 해상구조 제품	해상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
	6-2. 구조물 내 구조 제품	빌딩, 지하공간, 터널, 운송수단 등 구조물(시설)내의 인명 구조 및 주요 물품 회수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
	6-3. 야외구조 제품	산악사고, 산불, 교통사고 등 야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
7. 복구	7-1. 시설물복구 제품	주택, 공공시설 복구 등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
	7-2. 구호 제품	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
8. 기타	8-1. 기타 재난안전 제품	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